#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89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이해식・김원이・서영교

박상혁 • 홍기원 • 정을호

박홍배 · 안호영 · 서영석

조정식 • 천준호 • 박정현

양문석 • 이연희 • 한병도

남인순 · 조인철 의원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섬도 서해 5도와 같은 접경지역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2 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천 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생활지원대상섬"이라 한다)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생활지원대상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생활지원대상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7조의2(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천광역시 강화군에
	<u>속하는 주문도·볼음도·아차</u>
	<u>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u>
	동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생활지원대상섬"이라 한다) 주
	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생활지
	원대상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
	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생활
	지원대상섬에 주소가 등록되
	<u>어 있는 자</u>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
	<u>자</u>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
	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u>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u> <u>령령으로 정한다.</u>